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55호(號) 1929년(昭和 4) 7월 9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4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7월 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별표(別表) 화물등급표(貨物等級表) 중(中)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자기(自己)의 차륜(車輪)으로 운전(運轉)하는 차량(車輛)의 부문[部] 철도차량(鐵道車輛)의 항(項) 「기동차(汽動車)」¹⁾의 다음에 「가솔린동차(gasoline動車)」를, 동(同) 화물보통임률표(貨物普通賃率表) 중(中)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자기(自己)의 차륜(車輪)으로 운전(運轉)하는 차량(車輛)의 부문[部] 「기관차(機關車), 탄수차(炭水車), 기동차(汽動車)」의 아래[下]에 「가솔린동차(gasoline動車)」를 추가(追加)하고, 동(同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품목란(品目欄) 「기관차(機關車), 탄수차(炭水車), 기동차(汽動車) (자기[自己]의 차륜[車輪]으로 운전[運轉]하는 것에 한[限]함)」를 「기관차(機關車), 탄수차(炭水車), 기동차(汽動車), 가솔린동차(gasoline動車)(자기의 차륜[車輪]으로 운전하는 것에 한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1) 역차: 엔진을 탑재(搭載)한 열차(列車)의 차량(車輛)으로서, 인원(人員)·하물(荷物) 또는 화물(貨物)을 적재(積載)하는 공간(空間)을 가지고, 운전(運轉)에 필요한 동력원(動力源)으로서 내연기관(內燃機關)이나 증기기관(蒸氣機關) 등의 열기관(熱機關)을 탑재하여 스스로 주행(走行)하는 철도차량(鐵道車輛)이다.